

## 전국대학4-H연합회 회칙

1963년	제정	2005.	6.	27.	개정
1983. 12. 19.	개정	2005.	12.	16.	개정
1985. 2. 16.	개정	2013.	2.	16.	개정
1986. 12. 30.	개정	2015.	5.	31.	개정
1988. 2. 14.	개정	2016.	5.	29.	개정
1989. 2. 12.	개정	2017.	5.	6.	개정
1992. 2. 11.	개정	2017.	9.	16.	개정
1994. 2. 2.	개정	2018.	9.	15.	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전국대학4-H연합회(영문사용시 National College 4-H Union of Korea :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지.덕.노.체의 4-H이념을 바탕으로 전국 대학4-H회원들의 자율적 학습 활동 및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자조 협동적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4-H운동을 더욱 향상 발전시켜 4-H회와 지역사회 및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한국4-H본부 내에 둔다.

**제4조 (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대학4-H회의 조직 및 유대관계 증진
2. 각종 4-H 교육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행사 진행추진
3. 각종 4-H 간행물 발간과 홍보에 적극 참여
4.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

**제5조 (운영원칙)** 본회는 한국4-H활동규범을 준수하고, 4-H활동주관단체인 한국4-H본부로부터 육성지원을 받는다.

## 제 2 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구성)** 본회는 전국 각 단위 대학4-H회와 한국4-H본부 직할 대학4-H회인 서울아카데미에 가입한 회원을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제7조 (연차등록)** 본회는 한국4-H본부에 매년 4월말까지 다음 각 호를 제출하는 연차등록을 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회원명부 1부
2. 임원조직현황 1부 (연합회, 서울아카데미, 단위 대학별)
3. 주요활동계획 1부

### 제8조 (회원의 권리의무)

1.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의 활동과 운영전반에 관한 의견개진 및 보고받을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제9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선출직 임원
  1. 회장 1인
  2. 남·여부회장 각 1인
  3. 감사 2인
- ② 임명직 임원
  1. 사무국장 1인
  2. 대외협력국장 1인
  3. 교육과제국장 1인
  4. 재무국장 1인

- ③ 당연직 임원
  - 1. 직전회장 1인

#### 제11조 (임원의 임무)

- ①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 2인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회의 활동 및 예산집행 등 업무를 감사한다.
  - 4. 사무국장은 회장단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5. 대외협력국장은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타단체와의 협력증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6. 교육과제국장은 본회의 교육과 과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 7. 재무국장은 본회의 전반적인 재정과 세출예산을 담당한다.
- ② 각 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국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 제12조 (임원의 자격과 선출)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① 선출직 임원의 출마자격은 대학4-H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고, 중앙단위 4-H교육행사에 2회 이상 참여한 자로 하며,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하는 회원은 선관위에 사전등록 해야한다.
  - 1.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투표를 통해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2. 단독으로 입후보한 경우, 가부를 묻는 투표를 통해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선관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한다.
- ② 임명직 임원은 대학4-H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제13조 (임원의 임기 및 인준)

- ① 임원의 임기는, 인준시기로부터 차기임원 선출일까지이고, 1년 1회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임원에 대해 한국4-H본부 회장이 인준한다.
-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단, 보선은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며, 6개월 이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제14조 (임원회의)

- ① 임원회는 회장단, 감사, 사무국장, 대외협력국장, 교육과제국장, 재무국장으로 구성한

다.

- ② 임원회의는 회장단의 필요에 의해 소집하며, 참석대상은 임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으로 이루어지며, 사업계획 수립 등 본회의 총체적 운영을 조정한다.

## 제 4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5조(목적)** 본 규정은 선출직 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을 둔다.

**제16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본회의 선출직 임원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제17조(구성)

- 1. 선관위 위원장은 직전회장으로 한다. 직전회장이 위원장직을 이행할 수 없을 시에는 역대회장 중 가장 최근에 회장을 역임했던 자가 위원장직을 이행한다.
- 2. 선관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당해연도 남·여부회장, 감사 2인 및 위원장이 지명한 대학4-H회원 1인으로 구성한다.
- 3. 선관위 위원이 선출직 임원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등록과 동시에 사퇴해야 한다.
- 4. 선관위 위원이 사퇴하거나 결원이 생길 경우 선관위 위원장이 대학4-H회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의결)** 선관위의 의결은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9조(완료)** 선거 사후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총회에 선거관리 결과를 보고한다.

## 제 5 장 대의원총회

### 제20조 (총회의 지위 및 구성)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 ② 총회는 회칙 및 제규정을 준수한다.
- ③ 총회의 구성원을 대의원이라 하며,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전국대학4-H연합회 선출직임원 및 당연직 임원 6명
2. 연차등록이 완료된 서울아카데미 및 각 단위대학4-H회 대표 (회원수 20명 이상 39명 이하는 1명, 40명 이상 59명 이하는 2명, 60명 이상은 3명)
3. 각 단위대학(서울아카데미)4-H회에서 회원 수 19명 이하는 준 대의원 1명을 구성하여 의사결정권한은 없으나 총회에 참관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계획 보고
4. 사업 및 결산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22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① 정기총회는 연말총회, 연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며, 연말총회는 12월이내, 연시총회는 3월 이내에 소집한다.
- ② 임시총회는 본회 회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한국4-H본부와 협의 후 소집한다.
- ④ 총회를 소집할 때는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총회 의결정족수)**

-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 ② 회칙 개정은 임원회의의 발의로써 총회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24조 (회의록)** 총회 의사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2인이 기명날인하여 사무국에 보관한다.

## 제 6 장 재 정

**제 25조 (재정)** 본회의 운영과 활동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한국4-H본부의 지원금
3. 사업수입
4. 국고 및 유관기관의 보조금
5. 기타수입

## 제 7 장 보 칙

### 제26조 (협의 및 통보)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임원의 협의를 거쳐 한국4-H본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 수립과 실천방안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7일 이내에 한국4-H본부에 통보해야 한다.
  1. 총회 및 임원회의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등록 및 탈회에 관한 사항

제27조 (위임) 총회의 구성원은 회의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총회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28조 (지위) 본회는 한국4-H본부의 준회원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제29조 (일반관례) 본 회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 칙

1. (시 행 일) 개정된 회칙은 한국4-H본부 회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폐지규정) 이 회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회칙은 폐지한다.